

부산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가합44240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5897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가합44240 판결

전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고1. B 주식회사

2. C

3. D

4. E

5. F

6. G

7. H

8. I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안창환, 이현정

변론 종결2021. 9. 15.

판결 선고2021. 11. 3.

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28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2020. 4.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20. 6. 22.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D와 피고 C 사이에 2020. 1.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D는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20. 1. 29. 접수 제17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E와 피고 C 사이에 2020. 1.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E는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20. 1. 23. 접수 제15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F와 피고 C 사이에 2020. 1. 15.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 나. 피고 F은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20. 1. 15. 접수 제9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20. 2. 28. 접수 제40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G와 피고 C 사이에 2020. 1. 23.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G와 피고 H 사이에 2020. 1.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다. 피고 H는 피고 C에게,
 - 1)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20. 1. 23. 접수 제15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 2)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20. 3. 4. 접수 제43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I과 피고 C 사이에 2020. 1.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I은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20. 1. 21. 접수 제1325호로 마친 각 지분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7.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I과 피고 C 사이에 2020. 1. 2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I은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20. 1. 21. 접수 제1326호로 마친 각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8.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F과 피고 C 사이에 2019. 12.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F은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9. 12. 30. 접수 제210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9.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0.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 계약은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체결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주었다.

1	2019. 9. 9.	195,580,000	2019. 8. 16.~ 2020. 4. 30.	주식회사 J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
2	2019. 9. 9.	195,580,000	2019. 9. 9.~ 2020. 4. 30.	납품계약에 따른 선금금 지급보증	

2)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자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보험사고 및 주계약의 해지)

본인(피고 B)과 보증인(피고 C)은 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시기 및 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보통약관의 내용이 아래 각 호와 같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본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가 보증하는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주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야 하며, 이 경우 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 ① 본인이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합니다)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③ 본인과 보증인은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외에 회사가 지급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1. 본인·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사의 구상채권·대위채권 등의 보전(해지포함)·이전·행사에 소요된 비용
2. 담보목적물의 조사·추심·처분에 소요된 비용
3. 소송비용, 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실행 등에 소요된 법적 제비용 및 민사집행법에 의한 재산조회 비용 등
4. 기타 법률상 또는 약정상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제8조(연대보증)

① 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본인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4)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제4조 제2항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2016. 1. 1.부터 시행된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보험금 지급일의 익일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는 연 9%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B은 2020. 2. 3.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상 주계약으로 정한 납품계약에 관한 공사포기각서를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 제출하였다. 이후 J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0. 3. 19. J에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286,282,900원(= 순번 1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77,800,000원 + 순번 2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08,482,9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의 각 재산처분행위

-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피고 C은 2020. 1. 21. 피고 D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29. 피고 D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C은 2020. 1. 23. 피고 E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E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 피고 C은 2020. 1. 15. 피고 F와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F에게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20. 2. 28.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부동산 피고 C은 2020. 1. 23. 피고 G와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G에게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G는 2020. 3. 4. 피고 H에게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 이전의 부가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C은 2020. 3. 4. 피고 H에게 위 각 가등기에 기하여 2020. 1. 2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C은 2020. 1. 17. 피고 I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21. 피고 I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6)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C은 2020. 1. 17. 피고 I와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20. 1. 21. 피고 I에게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7)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C은 2019. 12. 30. 피고 F와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F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호증, 을가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J에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구상금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구상금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 C은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① 피고 B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 C이 아니라 피고 C의 형인 K이고, ②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실제로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이 J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지 않자 피고 B의 명의로 J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후 L이 피고 B으로부터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체결된 것이고, 피고 C 역시 피고 B의 명의상 대표자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B의 구상금채무에 연대보증한 것에 불과하며, ③ 이후 피고 B은 2020. 2.경 위 공사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으로 J와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와 같은 피고 B, C의 주장 취지가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이를 피고 B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실제 계약당사자로 볼 수 없고, 피고 C 역시 위 각 보증보험계약의 실제 연대보증인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행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 B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피고들 주장과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 B, C은 계약당사자로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청구를 저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B,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282,900원(= 순번 1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177,800,000원 + 순번 2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108,482,9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20. 3. 20.부터 위 지급일 기준 30일째가 되는 2020. 4. 1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20. 6. 22.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 E, F, G, H, I(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칭할 경우 '피고 D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C의 제1의 다.항 기재 각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C의 위 각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체결로부터 불과 1개월 이내인 2020. 2. 3.경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의 위 각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2) 피고 C의 각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체결행위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2호증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은 피고 B의 주식 50%를 소유한
주주이고, 나아가 피고 B을 대표하여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점, ② 피고 C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은 2019. 12.
30.경부터 2020. 1. 23.까지 불과 1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그 상대방 역시 모두 피고 C의 친구 내지
지인으로 가까운 사이에 있던 자들인 점, ③ 피고 C은 위와 같은 각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체결 직후인
2020. 2. 3. J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의 위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체결행위는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3) 피고 C의 채무초과 여부 가) 살피건대, 갑 제17, 20, 21, 22, 23호증, 을가 제8, 11, 18,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과 피고 D, E, F, G, I 사이의 각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체결 무렵 피고 C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436,528,000원, 소극재산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4,323,630,013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1] - 피고 C의 적극재산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3,000,000	
2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20,000,000	
3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	238,000,000	
4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부동산	250,000,000	
5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	67,000,000	
6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	200,000	
7	경남 함안군 M1) 이하 군 단위까지의 기재는 생략한다. 토지	111,696,000	토지 지상 수목 가액
		3,600,000	
8	N 토지	325,288,000	
9	O 토지	135,539,000	
10	P 토지	249,606,000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3,000,000	
11	Q 토지	3,113,000	
12	R 토지	123,105,000	
13	S 토지	587,225,000	
14	T 토지	67,637,000	
15	U 토지	129,614,000	
16	V 토지	5,094,000	
17	W 토지	4,811,000	
18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	12,000,000	
합계	2,436,528,000		

[표2] - 피고 C의 소극재산

1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피고 C의 각 재산처분행위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으므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역시 소극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상당하다.	286,282,900	
2	X조합에 대한 2013. 2. 28.경 대출금 채무	60,000,000	
3	X조합에 대한 2012. 10. 25.경 대출금 채무	100,000,000	
4	Y조합에 대한 2015. 10. 23.경 대출금 채무	120,000,000	
5	X조합에 대한 2020. 1. 13.경 대출금 채무	100,000,000	
6	Y조합에 대한 2015. 10. 16. 및 2018. 12. 20.경 대출금 채무	510,000,000	
7	Y조합에 대한 2018. 12. 20.경 대출금 채무	420,000,000	
8	X조합에 대한 2013. 8. 28.경 대출금 채무	100,000,000	
9	원고에 대한 2017. 7. 6.경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증채무	20,400,000	
10	Z은행에 대한 2009. 7. 15.경 거래약정에 기한 보증채무	2,606,947,1133) 위 채무액은 2020. 7. 31.을 기준으로 한 대여원금이기는 하나, 주채무인 피고 B의 Z은행에 대한 대여금채무 발생일이 2019년경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금 기준

1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피고 C의 각 재산처분행위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으므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역시 소극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상당하다.	286,282,900	
		채무액은 피고 C의 각 재산처분행위 무렵보다 적거나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을 피고 C의 소극재산액으로 본다.	
11	피고 F에 대한 2018. 11. 9.경 차용금 채무	220,000,000	원금 기준
12	피고 F에 대한 2019. 9. 9.경 차용금 채무	50,000,000	원금 기준
	AA에 대한 2018. 11. 9.경 보증채무	150,000,000	원금 기준
합계	4,323,630,013		

나) 이에 관하여 피고 D 등은, 위 [표2] 순번 10, 12 기재 각 채무는 피고 B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채무에 피고 C이 연대보증한 것으로, 각 채권자인 Z은행 및 AA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어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이 다른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고 C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표2]의 순번 10, 12 기재 각 채무의 채권자는 원고가 아닌 Z은행 또는 AA이므로, 피고 D 등의 주장과 같이 위 각 채무에 관하여 Z은행 또는 AA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 여부 판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D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사해행위의 성립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피고 C이 피고 D 등과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피고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위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의 체결 경위, 피고 C과 피고 D 등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공동담보의 부족으로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 및 전득자인 피고 D 등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D 등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 피고 D 등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D 등은 자신들이 악의의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아니라고 항변하나 피고 D 등이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 등이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가 2020. 1. 21. 피고 C와 체결한 매매계약, ②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가 2020. 1. 23. 피고 C와 체결한 매매계약, ③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가 2020. 1. 15. 피고 C와 체결한 매매계약 및 매매계약, ④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G가 2020. 1. 23. 피고 C와 체결한 매매계약 및 피고 G가 2020. 1. 23. 피고 H와 체결한 매매계약, ⑤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I가 2020. 1. 17. 피고 C와 체결한 매매계약, ⑥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I가 2020. 1. 17. 피고 C와 체결한 매매계약, ⑦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가 2019. 12. 30. 피고 C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나아가 위와 같은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① 피고 D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② 피고 E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③ 피고 F는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④ 피고 H는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⑤ 피고 I는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일부이전등기 및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주혁

판사박병주

판사주재오

별지

1) 이하 군 단위까지의 기재는 생략한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피고 C의 각 재산처분행위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으므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역시 소극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상당하다.

3) 위 채무액은 2020. 7. 31.을 기준으로 한 대여원금이기는 하나, 주채무인 피고 B의 Z은행에 대한 대여금채무 발생일이 2019년경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채무액은 피고 C의 각 재산처분행위 무렵보다 적거나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을 피고 C의 소극재산액으로 본다.